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 정 2019. 1. 29. 전부개정 2022. 2. 3.(1차) 일부개정 2022. 7. 27.(2차) 일부개정 2023. 3. 16.(3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47조 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신청사업장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하며 운영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절감실적 등의 산정·보고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IPMVP, ISO 1774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산출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여, 사업추진 방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2. "일반사업"이란 계측전송장치를 부착하여 개체 전후 설비의 전력량 등 측정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기록관리 하여 에너지절감성과를 산정하고 필요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3. "특화사업"이란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정부교류활동 지원 및 효율 향상설비개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주관기관"이란 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5. "신청사업장"이란 조성사업에 신청한 사업장을 말한다.
- 6. "지원사업장"이란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에 효율향상설비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 7. "참여전문기업"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진단, 에너지절감량 산정방법에 대한 컨설팅, 효율향상설비 개체지원, 베이스라인 설정, 절감량 산정지원 등 조성사업의 일부를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ESCO등록업체(또는 B등급 이상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 8.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계 측전송장치 설치, 점검 등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기통신분야 면 허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9.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 또는 제7호의 참여전문기업이 효율향상설비 도입을 위해 견적 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말한다.
- 10. "보조금"이란 지원사업장이 설비 등에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에너지 사용량 설정, 효율향상설비 개체 등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11. "총사업비"란 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비 등에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에너지사용량 설정, 효율향상설비 개체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부가 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12. "설비설치비"란 신청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건축물 등에 효율향상설비를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설비비 및 시공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13. "설비비"란 신청사업장이 조성사업의 효율향상설비를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순수 한 기기비용을 말하며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14.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설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5. "수행책임자"란 신청사업장의 지원사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사업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6. "수요조사"란 조성사업의 신청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효율향상설비·시스템. 관련기술을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성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2.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운영위원회에의 회부
- 3.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 4. 조성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활용촉진 등 사업관리

- 5.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홍보
- 6. 기타 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주관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연도 조성사업 전체 예산의 일부를 사업수요조사, 운영위원회의 운영, 기타 조성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장 등) ① 지원사업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 2.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 등의 성실한 이행
- 3.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 4. 조성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
- 5. 설비 및 계측전송장치가 정상작동이 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수행
- ② 지원사업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계측전송장치의 유지를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장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수행책임자)** ① 지원사업장은 당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참여 인력 중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의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제출
 - 2. 사업 수행 전반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 3. 분기별 추진실적 및 주요현안 관리사항 주관기관 통보
 - 4. 사업수행 최종결과의 보고
 - 5. 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활용
 - ③ 수행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지원사업장은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
 - 2. 조성사업 지원사업장 선정 및 정부지원금 규모 적정성에 관한 평가
 - 3. 조성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평가
 - 4. 조성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평가

- 5.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심의
- 6.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의 제재조치,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에 관한 심의
- 7. 지원설비의 처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심의
- 8.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심의
- ② 위원회 위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총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조성사업의 신청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당해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사업관리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⑥ 위원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상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범위) ①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측 정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 2.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내 전력효율향상 목표수립 및 이 행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 업
 - 3. 기타 주관기관이 지역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제고, 에너지효율자 원 발굴 및 시장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9조(보조금 지원범위) ①보조금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측전송장치 구축, 베이스라인설정 및 절감량산정지원, 효율향상설비 개체 등에 따른 제반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 ②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예산규모와 지원한도금액은 사업구분,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사업장에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르며, 동일법인 내 사업장들이 지원받는 보조금 총합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효율향상설비 개체,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설정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대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로 한다.
 - ③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대상 설비·시스템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른다.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설비·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시스템은 매년 자체설비조사 및 제11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제11조(수요조사) ① 주관기관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규효율향상설비·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신규효율향상설비·시스템을 공모결과 우수한 제안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사업장 선정

- 제12조(사업공고)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원사업의 구분 및 사업개요
 - 2. 지원설비·시스템 및 지원범위
 - 3. 신청자격
 -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주관기관은 일반사업 및 특화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신청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 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설치소재지, 대상설비, 설치 대수,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신청사업장은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기기 및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전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는 기관(기업 포함)의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이거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2. 휴·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4.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6.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7.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8. 신청설비가 유사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중이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 9.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조치를 받아 제재기간 중인 사업장인 경우
 - 10. 기타 조성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계획서 평가) ①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12조 제1항제4호의 당해 연도 사업공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에너지절감효과,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등 계량지표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량 산정 계획의 타당성 등 비계량지표로 구성한다.
 - ③ 주관기관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적정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공고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은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사업 장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선정결과의 통보 및 보고) 〈삭제〉

- 제17조(선정결과의 통보) ① 주관기관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당해 연도 선정기준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장을 선정한다.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선정의 취소)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사업 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 조작한 경우
 - 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장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 3. 신청사업이 자금융자 등 정부예산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설비일 경우
 - 4. 선정된 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기타 조성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절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제19조(협약기간) ① 조성사업의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다음년도의 말일까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기·시스템의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약사항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조성사업의 추진 상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장과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사업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해 선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조성사업 협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장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장이 불응할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범위 축소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 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 신청사업장과 잔여예산범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 17, 18, 19조 및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 2.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 3.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 4. 기타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장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원설비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사업장은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보고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선정사업장 취소처리 또는 선정사업의 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할수 있다.
-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당해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4. 지원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지 등으로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려운 경우
 - 5. 제14조에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선정 취소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 6. 특별한 사유 없이 효율향상설비 설치가 당해 연도 공지한 완료일까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7.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사업의 진도·결과보고 등을 불이행한 경우
 - 8.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 9. 기타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의 집행중지, 보조금 환수 및 제재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조금은 지원사업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구축된 설비 및 시스템의 확인 이후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은 설비 및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후 설치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장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확인을 수행하며, 현장확인업무 수행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지정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 ④ 지원사업장은 현장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한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현장확인 결과 및 제4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받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이 지원사업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 및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제25조(사업의 진도·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연도의 12월까지 월 1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월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간 전력 데이터 모니터 링 결과를 당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 14일 범위 이내로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원사업장은 제20조제1항의 확정 사업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에 너지절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연도의 10월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업결과 현장실태조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추진실적보고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현황 : 계획대비 달성 여부 및 사업의 활용실적 등 사업 수행내용
 - 2. 사업성과 : 기기·시스템, 서비스, 기반구축 등 사업의 연계효과 및 기타 성과
- 제27조(설치설비의 관리) ① 지원사업장은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은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하야 하여야 한다. 단, 설비 크기 등의 사유로 명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 및 설비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지원사업장이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 관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장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8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 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이를 지원사업장에 통보한다.
 - ③ 지원사업장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주관기관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④ 지원사업장이 설비설치완료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가액의 일부를 주관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할 수 있다.
 - 1. 처분설비에 대한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최종가액으로 산정한다.
 - 2. 산정된 최종가액에서 협약서 상 지원받은 보조금 지원비율만큼의 금액을 반납한다.
- 제29조(소유권 이전) ① 지원사업장이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원사업장을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제30조(성과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사업장은 조성사업 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은 구축된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성과활용 결

- 과보고를 사업종료 후 2년간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사업장은 사업결과와 관련하여 효과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 등을 운영결과보고에 수록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종합분석을 할 수 있다.
- 제31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조성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지원사업장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다.
- 제32조(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1.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23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제28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7.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8. 기타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보조금 환수조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환수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한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제7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 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 ④ 기타 보조금 환수·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보조금법」 및 「공 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다.

제5장 보칙

- 제34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바에 따라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5조(처분통보) ① 주관기관은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원사업장, 참여전문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9호서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22년 조성사업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화사업)** 조성사업의 특화사업의 지원사업장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표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 사업공고문의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22.7.27.)

이 지침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00.)

이 지침은 2023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o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 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 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공단의 요청 및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신청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설비모델과 상이한 모델이 시공 되었을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공문으로 모델변경 승인절차를 받 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변경 (지원설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사업 참여제한 3년
· 지원설비를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사업취소 및 보조금 전액환수 · 사업참여제한 5년
·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장 상태의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 사업취소 및 보조금 전액환수 · 사업참여제한 5년
· 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정상적인 전력사용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계측전송 장치 관리책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사업참여제한 3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취소 및 보조금 전액환수 · 사업참여제한 3년
· 대금지급 문제 등으로 공단과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설비설비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체를 말함)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규정 위반 등 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기타 국가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일반)

사업장 신청사업장	명										
│ 신성사업상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						법인등록번호				
참여전문기업 기업명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업체면}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효율향상설비 업체명 설치업체 업체명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업장 기업구	분] 소기업		중기]업	□ 중견기	l업		□ 비영리	
정보 주업경	<u> </u>						주생산품				
업종 구분 (전력요금기준)		산 업	8	□ 일 빈	- 용		□ 교 육 용			동 사 용	
수행책임자 수행책임	l zl	소속					이메일				
(대표이사 제외)	3/T	직급	성	명			휴대폰				
효율향상설비 개체 내용 · 사업	업계:	획서 🤊	참조	·			청사업장 용평가등급				
7	· 분		소요	- 금액		Ę	!간 부담금		정부	· 보조금	
호율형	당상	크비	비]		천원		천원				천원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구축 천원				천원				천원
베이스라					천원		천원 				천원
	사업				천원	-1 -		원			천원
가점 항목 <mark>항목 1</mark> (해당시 기입) _{하모 2}		<u>점)</u> :				_	부 2(<u>점)</u> :				
84.0		<u>점)</u> :				_	¦ 4(<u>점)</u> : _				
유의사항 0 운영	청사 경지	업장어 침 제]] 있음 [4조제1항에	해당하	는 경	경우 지원	기입 등으로 닌대상에서 제 용은 공공의	외됨			임은
위와 같	<u></u> [이	에너	지효율시점	········ 장 조성	사업	사업신	· · · · · · · · · · · · · · · · · · ·	출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청사업장 :			(직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٠.										

※특화사업 사업신청서는 당해연도 사업공고를 따른다.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목차 및 주요내용 >

1. 사업계획

- 1) 사업장 개요
 - 업종, 주생산품, 준공년도, 근무자수, 교대근무형태, 사업장 연면적 등
- 2) 사업장 에너지현황
 - 전년도 총에너지사용량(toe), 에너지원별 비중, 연간 전력사용량(MWh)
 - 주요에너지사용 설비 현황
- 3) 추진배경 및 목적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신청 목적 및 이유(에너지절감 원리 중심)
- 4) 설비개체 ※ 신청설비별로 작성(동일한 설비의 경우 통합 작성)
 - 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구성도 : 해당설비가 포함된 시스템 경계에서 해당설비 위치 및 사용처, 에너지 입출력, 계측전송장치 및 관련변수 측정점 표시 및 내용설명
 - 기존설비 및 효율향상설비 내역 : 설비명, 타입, 제조사, 모델명, 용량, 설치연도, 수명 등
 - 효율향상설비 설치비용 : 제품가격, 시공비(VAT제외) (※ 비교견적 후 해당설비 선정 이유)
- 5) 에너지절감효과(예상에너지절감량) ※ 신청설비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총량 합산
 - 예상에너지절감량 산정식
 - 기존설비 전력사용량 및 관련변수 산정근거 (※*측정한 경우 측정기간, 측정방법 등 명시*)
 - 가동시간, 부하율 등 예상에너지절감량 산정을 위한 관련변수 추정근거
 - ※ 에너지진단 또는 ESCO 사업으로 도출한 경우 개요 명시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 6) 사업추진일정
 - 협약 후 계측전송장치 설치, 베이스라인 수립, 설비개체, 절감량산정 등 세부일정
- 2. 에너지절감량산정(M&V) 계획
- 1)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 및 산출식
 - ※ 설비운전특성을 고려하여 비용효과적인 절감량 산정방법을 수립
 - ※ 연간 부하변동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설비개체 전후 전력사용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IPMVP, ISO 50041, 공단 가이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 참조
- 2) 기존설비 베이스라인 전력사용량 및 관련변수 수집 방법(측정 또는 추정)
- 3) 효율향상설비 전력사용량 및 관련변수 수집 방법(측정 또는 추정) ※ 2), 3)의 경우 측정기간, 측정방법, 추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4) 연간에너지절감량 산정 및 실적보고서 제출 계획
- 5) 실시간 전력사용량 데이터 모니터링 및 월간보고서 제출 계획
 - ※ EER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전력데이터 정상수집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계획 포함
- 주1)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M&V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 후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 후 사업 추진
- 주2)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공고의 별첨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
- 주3) 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별도의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제출(세부내용 엑셀파일 참조)
- 주4) 필요시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파일로 제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컨 소	신 청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시	참여전문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엄	계측전송장치 설 치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구 성	효율향상설비 설 치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목적 : '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신청□ 사업기간 : 2000. 조성사업 협약일 ~ 2000. 12. 31.									

참여업체(기관)]관)		역할
신	 청	사	업	 장	사업총괄 및 수행책임, 현장지원, 설비 데이터 현장 수집, 현
~건	78	^\F	ㅂ	´oʻ	장안내, 설비운영 등
참	여	전 문	7]	어	사전진단, 에너지절감량 산정 방법 컨설팅, 베이스라인 설정 및 에너
72	۳	也 正	<i>/</i>	日	지절감량 산정 지원, 효율향상설비 개체지원 등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설치약	법체	계측기/계측전송장치 설치 및 점검, 정상작동 유지 관리 등
हुं द	유향싱	- - - - - - - - - - - - - - - - - - -	석치약	년 체	효윤향상석비 개체 시우저 및 A/S 등

□ 컨소시엄 참여구성별 역할(과업범위, 참여기관별 역할을 간략히 기재)

위 컨소시엄은 '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업체(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사업선정 이후에도 동일한 역할을 성실시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사업장)	(대표)	(직인)		
(참여전문기업)	(대표)	(직인)		
(계측전송장치)	(대표)	(직인)		
(효율향상설비)	(대표)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적격신청여부 확약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적격신청여부 확약서									
신 :	신 청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참ㅇ	후전문:	기 업		사업자등록	번호					
	□ 신청사업장 적격여부 점검표									
	No		· · · · · · · · · · · · · · · · · · ·		신청	사업장	참여전등	근기업		
	1	정부	- -부처 수행사업 참여제한 사약	업자 여부	□유,	 □무	□유,	 □무		
	2	휴폐	업, 부도, 기업회생절차, 파산선	고 해당여부	□유,	□무	□유,	 □무		
	3	완전	· 자본잠식상태 해당여부		□유,	□무	□유,	□무		
	4	금융	- 불량 거래처 규제 해당여부	-	□유,	□무	□유,	□무		
	5	국서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유,	□무	□유,	□무		
	6	최근	· 연도 말 부채비율 500%이상	상 여부	□유,	□무	□유,	□무		
	7	필수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	위작성 여부	□유,	□무	□유,	□무		
	8	신청	설비 유사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유,	□무	□유,	□무		
	9	조성	사업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사업	장 참여여부	□유,	□무	□유,	□무		
없	너지효 <u>으</u> 며, 5	율시 만약	신청사업장 적격여부 점검항·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제출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선 ⁷ -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전검토)①	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 사항이		
(산	<u></u> 청사입	급 장)	(대표)	20	년	월 (직인)	일		
(참	(참여전문기업) (대표)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에너	지효율시장 조	C성사	법 사업	비 산출내]역/	너			
	총사업비 집계표	(VAT제외, 단위: 천	[원)							
No	구 분	계약예정업체	견적서	금액	민간부담금	- 액	정부보조	조금신청	讨액	
1	효율향상설비									
2	계측전송장치 구축	축								
3	베이스라인 설정	드								
	· 총 사약	[비								
	견적서 비교내역	서 (VAT제외, 단위:	원)							
	구분	업체명			 견적 금액			비고		
		업체명1	업체명1					선정		
	효율향상설비	<i>업체명2</i>	업체명2							
		<i>업체명3</i>								
* .	물품 특수성으로 비교	견적이 어려운 경우 한	한국원가관	믜협회에 등	목된 전문기관을	을 통하	ዘ 원가계4	노 및 적	용	
유의	의사항 · 정부보 · 총사업	상설비 보조금 지원 ⁶ 조금 신청액은 총액 비, 민간부담금액은 상설비는 비교견적서	기준 백년	간원 단위 준 십만원	미만은 절사힌 단위 미만은 절	절사한		<u></u> 설정 제5	리)	
	위와 같이 에	너지효율시장 조~	성사업 /	사업비 4	산출 내역서	를 제	출합니	다.		
						20	년	월	일	
				수	행 책임자 :				(인)	
				신:	청 사업장 :			(직	!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나: 1. 견적서 각 1부 2. 세부내역서 1박	(설비비와 시공비의 부(해당시 제출).	비목을 -	구분하여 :	제출).					

[별지 제6호서식] 효율향상설비 신규제안서

	에너	키기호	i율시장 3	조성사업 회	1 율향상설비] 신규제안/	न
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型] 日]	대표자명				이메일		
제 조	담당자명				연락처		
사	주 소						
			신	규 제안 고효	율설비 사양		
섵]비개요 (용	도)					
]비명 (모델	며)	규 격	용량(kW)		공인시험결과	
	[미경 (도월	ਰ <i>)</i>	11 4	3 8 (KW)	시험기관	시험결과	시험일자
			신규 제인	· · 고효율설비	설치운영 사용실	실적	
()	추천업체명 사업자등록번	ই)	대표자	투자비(백만원)	설치운영기간	절감량(⊿kWh)	절감률(%)
					~		
					~		
					~		
제출	된 내용이	사실과		될 경우 보조금		및 설치운영실적 업참여 제한 등의	
						20 년	월 일
			한 국 어] 너 지 공 및	단이사장구	하	
					수행책임지	h:	(인)
	설비제작자	:		(직인)			
					지원사업정	t:	(직인)
	첨부 서류		2. (필수) 추 3. (필수) 공 4. (필수) 신 5. (선택) 설 6. (선택) 설	*천대상 현장석 (인시험성적서 [규제안설비 서 [비설치 자금전 [비설치운영실	나양 안내서(카딜 집행내역 증빙서 적 증빙서류(절	† 1부. 전기안전) 각 1· 로그 등) 1부. 류(세금계산서 등	[-)

[첨부1 양식] 신규 제안 효율향상설비 추천서

신규 제안 효율향상설비 추천서 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설비설치현장 소재지 ㅇ 설비 사양 개체 전 개체 후 설비명 용량(kW 설비명 용량(kW 규격 제조업체 규격 제조업체 (모델명) (모델명) 0 사용 현황

		전력사용량(kWh)				
설치 일자	운영 기간	기 기 기	개체 후	정기나라	절감률(%	
		개체 전	개세 우	절감량)	
	_					
	~					

당사에서 운영하였던 기존 설비를 개체하여 5% 이상의 전력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설비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인)

추천업체(기관)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1. 기업 일반현황

신청사업장명	수행책임자	
사업장 담당자	연 락 처	
사업장 주소		

2. 신규직원 채용계획

근무 회사	채용 예정일	
근무 장소	인 원	
직 종	근무형태	
해당사업과의 연관성		

본 사업장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사업장 대표: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서류

- 1. 신규직원 채용 내부 품의문서 또는 채용 공고문 사본
- 2. 신규직원 채용 결과공문(향후 채용 후)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소유자 사업참여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 사업참여 동의서								
신청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건축물 소유자		연락처							
상기 본인은 (OO 기업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신청	및 수행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효율향	상설비 개체, 계측전송장치	구축 등에 따른	건축물 내 시설 공사						
등 사업 추진과 된	<u></u> 관련하여 사업 운영지침에 수	-록된 제반 사힝	l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사업정	l· 대표	(직 인)						
) -11	\ 1 \ \ \ \ \ \ \ \ \ \ \ \ \ \ \ \ \ \						
	건축물 2	소유자	(서 명 또는 직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서류	1. 건축물 소유자 본인서명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는 인감증명서 1 부.						

[첨부1 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서류)

문서확인빈	호										
		Ė	르인서명시	나실확인	서						
성명 (한자)	(서명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만 기	재			.,,6						
주소											
	부동산 관련 용도	[] 제한물권	전(매매, 증여 등) 설정(근저당권 설정 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용도	용도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대경대당 등	주소								
	그 외의 용도	2021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	<i>업 동의서</i>							
위임받는	성명	(주) 사업장명((반드시 설비 설.	치 사업장과 대	표명 기	7 /スサト)					
사람		는지자 이외의 시 <i>:업장의 정확한 -</i>	람에게 위임하는 <i>주소 기입)</i>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자	사항을 확인	합니다.									
				(발급	신청지	F)				(서명	!)
비고											
발급번호								수	수료	300)원
위 본인으	서명사실을 [:]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 · 및 출징		장 또는 :	읍장 • 면징	· 동	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 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m²]

[첨부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 면>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개인정보항목 수집
- 2. 수집 항목
- 조성사업 신청 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 관계자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항목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항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동의자 성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 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업협약서(양식)

00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협약서(양식)

□ 사 업 명: 00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사업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사업비 (부가세 제외)

ㅇ 총 사업비 : 천원

ㅇ 민간 보조금 : 천원

ㅇ 정부 부담금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민간 부담금	정부 보조금
총 사업비	효율향상설비	천원	천원	천원
사업비 (부가세	계측전송장치 구축	천원	천원	천원
제외)	베이스라인 설정 등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 협약당사자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협약사업장) 지원사업장 OOO 대표 참여전문기업 OOO 대표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OOO 대표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OOO 대표

□ 수행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공단)과 (협약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사업의 수행)

(협약사업장)은 수행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공단)은 (협약사업장)에게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사업 운영지침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변경 또는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 ① (협약사업장)은 월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보고서 및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를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약사업장)은 (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행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협약사업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협약사업장)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운영지침 사항을 준용하여 첨부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 ① (공단)과 (협약사업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당해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4. 지원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지 등으로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려운 경우
- 5. 운영지침 제1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선정 취소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 6.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 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7. 특별한 사유 없이 효율향상설비 설치가 당해 연도 공지한 완료일까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8.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사업의 진도·결과보고 등을 불이행한 경우
- 9.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 10. 기타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운영지침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단)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운영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집행 중지,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④ 동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조성된 전력기반기금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별표2] 제46호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공단)은 기반조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정부를 대행하여 보조금 법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 ① (협약사업장)은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의 활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사업성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사업장)에게 사업성과 의 공개 또는 제3자 제공 등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협약사업장) 및 사업 참여전문기업 대표자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만일 (협약사업장)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협약사업장)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 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협약사업장)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사업의 운영지침과 당해연도 사업공고 는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가주한다.

제11조(해석)

-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협약사업장)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석에 의한다.
-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사업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사후관리)

해당시설에 대하여 (협약사업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 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협약사업장)에게는 조성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설비의 용도)

해당시설은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자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 ① (협약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지원사업장에 통보한다.
- ③ (협약사업장)이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④ (협약사업장)이 설비설치완료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가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1. 처분설비에 대한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최종가액으로 산정한다.
- 2. 산정된 최종가액에서 협약서 상 지원받은 보조금 지원비율만큼의 금액을 반납한다.

첨 부: 1. 확정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수록)

- 3. 사업장 인감증명서 1부
- 4.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증권 1부

년 월 일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협약사업장): 지원사업장 OOO 대표	(직인)
참여전문기업 000 대표	(직인)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000 대표	(직인)
And Education Control of the Control	(1 12)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OOO 대표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기존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할비 및 계측			·	•′ 1			
지원	사업장명				사	업자번호					
-	주소										
수형	생책임자 생책임자			(<i>)</i>	너명) 약	연락처					
현장	상점검자			(<i>)</i>	러명) <u>역</u>	연락처					
				기존설비 현화	황 점검결	과					
순번	설비	명	제조사	모델명	용량 (kW)	연동	설비1	연동	등설비2	2	
1	기존설((공기압:		KEA	VSD75	75	전력량기	세 순번1	RTU	I 순번1		
2	삼상유도	전동기	KEA	Abc	7.5	<i>전력량</i>	제 순번2	RTU	I 순번1		
				계측전송장치	시 점검결	과					
순번	설비 -	구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연동설비1		연동설비2		2	
1	전력령	<i>\$7</i>]	aaa	aaa	3상4선	공기압축기 순번1		RTU 순번1			
2	전력링	<i>\$7</i>]	계 bbb bbb 3상3선 삼상유		삼상유도전	· 동기 순번1	RTU	I 순번1			
3	RTU	IJ	bbb	bbb	SKT RoLa	공기압축기 순번1 삼상유도전동기 순번1			·계 순법 ·계 순법		
	점검결괴	} -	○점검결과 ○기타사항○	이상 없음 에 해당되는 !	변경사항	이 있을	<i>경우 세</i> 년	부내용 /	7] <i>X</i>]]		
	위와 같이 서를 제출			조성사업 기	- 존설비 :	- 확인 및	_ 계측전송	- 장치 점	- ქ검결	과를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대표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부: 1. 현기	 장설치	사진								
	2. 계를	추전송 ⁷	장치 설비규격	서(카달로그,	제원표	등)					

[첨부] 현장설치 사진

- 1. 기존설비 현장사진
- ★ 설비별 전경사진, 명판사진(모델명, 제조사, 시리얼넘버 등 식별가능해야 함)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공기압축기 #1		
전동기 #2		

2. 계측전송장치 현장사진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전력량계#1 (공기압축기 #1)		
전력량계#2 (전동기#2)		
RTU#1 (공기압축기)		
RTU#1 (전동기)		

		에너	지효율시기 (효율향신	장 조성사? 상설비 및 7			·	.서 				
지원	사업장명				사 약	겁자번호						
÷	주소											
수항	생책임자			()	((년)	연락처						
현장	상점검자			(,	너명) 인	연락처						
			3	a 율향상설비 [†]	현황 점검	결과						
순번	설비도	명	제조사	모델명	용량 (kW)	연동설	설비1	연.	동설비2			
1	기존설! (공기압:		KEA	VSD75	75	전력량계	<i>୩ 순번1</i>	R1	「U 순번1			
2	삼상유도	전동기	KEA	Abc	7.5	전력량계	<i># 순번2</i>	RTU 순번1				
				계측전송장치	시 점검결	과						
순번	설비 =	구분	제조사	모델명	규격	규격 연동설!		설비1 연동				
1	전력링	<i>₹계</i>	aaa	aaa	3상4선	공기압축기 순번1		RTU 순번1				
2	전력링	— <i>┊계</i> —	bbb	bbb	3상3선	삼상유도전동기 순번1		RTU 순번1				
3	RTL	J	bbb	bbb	SKT RoLa	공기압축. 삼상유도전	기 순번1 동기 순번1	전력량계 순번 1 전력량계 순번 2				
	점검결괴	-	○점검결과 ○기타사항○	이상 없음 에 해당되는 (변경사항	이 있을	 경우 세부	부내용	기재			
	비와 같이 서를 제출		너지효율시장 다.	조성사업 기	 존설비 :	ㅡㅡ 확인 및 :		·장치 :) 년		과를 일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누	루: 1. 현건 2. 게츠			1 시(키다근 ㄱ	게의묘	<u></u> こ						
	۷. الم	1/11万/	장치 설비규격	/ハバ ラエユ,	게건표 `	01						

[첨부1] 현장설치 사진

- 1. 효율향상설비 현장사진
- ★ 설비별 전경사진, 명판사진(모델명, 제조사, 제조번호, S/N 등 정보식별가능한 화질 의 사진첨부해야 함)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i>공기압축기</i> #1		
전동기 #2		

2. 계측전송장치 현장사진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전력량계#1 (공기압축기 #1)		
전력량계#2 (전동기#2)		
RTU#1 (공기압축기)		
RTU#1 (전동기)		

[별지 제12호서식] 정부보조금 지급 신청서

	정부보조금 지급 신청서										
지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구 분	총 액	민간부명	급	정부보조금						
정부 보고그	효율향상설비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신청내역	계측전송장치 구축	천원		천원	천원						
	베이스라인 설정 등	천원		천원	천원						
건 님	총 보조금 지급신청금액				천원						
정부 보조금	은행명 <i>사업비 전용계좌 정보 기재</i>										
지급 정보	계좌번호	사업	비 전용계3	작 정보	7] 자]						
0 1	예금주명	사업	비 전용계3	작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인)

지원사업장 : (직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첨 부 1. 세부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설비 및 비용 항목별 구분)
 - 2. 세금계산서
 - 3. 설비 하자이행증권(보증기간 협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٥	레너	지효율	시장	조성	사업	사	-업계	ᅨ획변	경 4	승인	신경	성서					
지원사업장 사업장명								사업 등록)										
참여전	문기업	7]업명							사업 등록)								
계측전송장치 업체명 설치업체		설체명							사업 등록I	과								
효율향 설치	상설비	Ŷ	설체명							사업 등록)								
	선택	변	경항목			변 경	전			- 0 1		변	경 후					
		사임																
		총	사업비						(천원)						(천	[원)		
		민긴	· 부담금						(천원)						(천	[원)		
변 경		정투	부보조금						(천원)						(천	[원)		
사					설비명													
항				지 원	제조사													
		설	모델명															
		비	용량															
			가격															
			기타															
변경	사유																	
유의	사항	0	변경신	청서 제	출한 니	개용이	허위	기로 팀	바 혀질	경우 >	제재2	조치 및	ļ 지원	대상 기	세외			
	위와 같	<u></u> [0]	2000년	에너지	효율시	·]장 조	조성시	사업	사업계	획의	변경	을 신	청합니	니다.				
												20	년	월		일		
									지원	사업경	상 :			(직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1. 변경서 (필요시)		내용 에 관련된	트 증빙 <i>서</i>	 류 1부	<u> </u>												

[첨부1] 변경세부 내용

□ 변경 상세내용
□ 변경 사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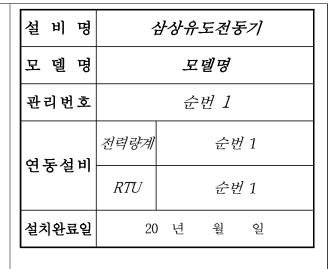
[첨부2] 변경에 관련된 증빙서류

변경항목	증 빙 서 류
지원업체 정보	ㅇ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총 사업비 정부보조금	ㅇ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 등
지원설비 변경	변경설비의 사양, 모델명, 가격 확인 가능한 서류* 관련인증서, 견적서, 설비카달로그
지원 설비 설치 위치	ㅇ 설비 설치 위치 변경 전 후 도면 등
기타	ㅇ 기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증빙서류 등
공통	ㅇ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설비관리용 부착명판

설 비 명	공기압축기					
모 델 명	모델명					
관리번호	순번 1					
연동설비	전력량계	력량계 순번 1				
12 7 49	RTU	순번 1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설 비 명	전력량계					
모 델 명	모델명					
관리번호	순번 1					
연동설비	효율향상 설비	공기압축기 순번1 삼상유도전동기 순번2				
605	RTU 순번 1					
설치완료일	20	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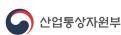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설 비 명	RTU				
모 델 명	모델명				
관리번호	순번 1				
연 동 설 비	효율향상 설비	공기압축기 순번1 삼상유도전동기 순번2			
U 0 E 7	전력량계	순번 1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지 원 사 업 장									사업	자번호																
	사 무	ŕ	<u> </u>	소	(우	:)																			
	소	ব	<u>લ</u>	화	***				F	AX																
사	설 치	- F	<u>ج</u>	소	(우	:)																			
업기	지지	ব	<u>લ</u>	화	***				F.	AX																
장 기	신	담	당	자 명					담당자	부서/직책																
/ · 본	신 청 설 비	타	ナフし	이메일			@		다다기	여라치	사 무 실	10 5														
- 정	刊	남당사		이 테 큰		@ 담당자 '		신탁시	휴대전화																	
보	.51	설비명 설치완료일						용량	및 수량		1															
	처 분			·료일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그	취	득금액					 - 처분·	예정일		
		액	처-	분금액					, , , , ,																	
저 반 수 유	처 분 사 유																									
	운영지침 제28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지원사업장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બીા	크지효율	울시장	- 조성사업	에너지	절감	실적	보고서	
	지원사역	업장						
	주 소	<u>-</u>						
사업장	업종			표준산업	를 분류코	드		
	대표/	아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책약	임자	-					
설비별 에너지절감	설비명 베이스라 에너지절건 절감량 산정식 관련변수 1		명 법 □측정 □추건 計 베이스라인 보고기간	旦	-고기간 <u>정기간,</u>	용도 단위 <i>측정간격</i> ,	추정방법	등 설명
실적	관련변수 2	산정방 ¹ 산정깂	법 □측정 □추정	<i>¾ ∻</i>	정기간,	<u> </u>		<i>등 설명</i>
	관련변수 3	변수명 산정방' 산정값	법 □측정 □추건 베이스라인 보고기간	ġ <u>*</u> * =	정기간,	단위 <i>측정간격,</i>	추정방법	등 설명
	, = -	널비별로	추가 작성					
사업장	일련 1		설비명			절감량[K	Wh]	
에너지절감	2							
실적	3	ਨੀ	l 7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절감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지원사업장: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보고/	첨 부: 보고기간 에너지절감 실적 세부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6호의2서식] 월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보고서

에너지효	울시장 조	성사업	월간 경	선력사용	-량 모니	니터링	보고서	
	지원사업장							
사업장	주 소							
	수행책임자							
	설비 설치일		20)	. (년.월.일	일)		
	보고기간(월)		()년	()월	1		
사업장 운영현황	교대근무		□ 1교대	□ 2	교대	□ 3교대		
正 0 27 %	월간 공장 가동일수	주중: (주중: ()일, 주말: ()일 <mark>월간 공장</mark> (가동시간					
	사업장 월간 전력소비량		() [MW	_		
	설비명	정격용량 [kW]	데이터 수집률 [%]	월간 전력사용량 [kWh]	월평균 소비전력 [kW]	월간 가동시간 [hr]	월평균 부하율 [%]	
전력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설비 운전							
(이상여부 및 조치내용)	계측전송장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설비별 월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지원사업장 :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기	이 공 단	: 이 사	장 귀ㅎ	1		
첨 부: 월간	15분 단위 전력	사용량 더]이터(엑셀	파일) 1부				

[별지 제17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지 원	! 사 업	장							
사 무	주	소	(우	:)					
소	전	화	75 3]	FAX		
	·고내용 및 경위								
	·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후계획 5 상자 의견								
	위와 같이 「2000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지원시	나업장 :	: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대	란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귀 사업장은 운영지침 제35조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	체명 :						
사업신청 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명	모 델 명	제조사	예상비용(원)			
대상설비							
승인금액							
□ 처분 니 _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한 국	20 년 월 에 너 지 공	^{일 일} · 단 이 사 장				

[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지 원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전 화	TS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운영지침 제36	5조(이의신청)에 따라							
		,	20					
지원사업장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YYYY.MM.DD))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